

공급대금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8다○○○○○○○	사건유형	공급대금
원 고	인천◇◇◇◇◇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18. 11. 29.	비 고	
사건개요	<p>- 원고는 인천■■■■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며 2011.4.4. 인천■■■■고 교사동 신축공사 착수, 2012.8월 경 완료하였음.</p> <p>-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부지 취득 및 교사 등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금 264억을 지급하고, 피고는 ▲▲도시개발구역 내 새 부지(15,269㎡)로 공급받되, 공급가격은 공급시점의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정하기로(19조8항)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시점에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인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지의 조성원가는 2,440,000원/㎡인 반면 공급시점인 2011.4.4. 기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1,320,000원/㎡이므로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급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인 20,155,080,000원(=1,320,000/㎡ x 15,269㎡)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 제기</p>		
주 문	<p><3심 판결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1심 판결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31.부터 2017.5.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2심 판결주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판결이유</p>	<p>가. 이 사건 부지의 공급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혹은 원고와 피고 교육청이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부지의 공급가액을 정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수액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교육청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의 부지매입비를 55억 원으로 이 사건 부지의 공급가액을 55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5억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p> <p>나. 이 사건 부지의 공급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를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기타사항란(제19조)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규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교육청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p> <p>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8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교육청에게 55억 원에 이 사건 부지를 공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없다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공급이 예정된 부지의 공시지가 등은 원고나 피고 교육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 교육청은 55억원에 총 사업비 협상을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의 이전 부지로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상호 새 부지의 공시지가나 조성원가, 감정가액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p>라. 피고 교육청은 원고가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자동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대리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 교육청이 주장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등과 관련된 기초사실을 인정한 데에서 나아가 원본채권의 이행기가 도과되어 원고가 이행을 지체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p>